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약 제3조에 따른 요건은 개인이 다른 나라에 인도될 경우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의 초안에서는 개인이 고문에 처하여질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되었으나 협약이 채택·사용한 용어는 영국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그 제안보다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doc. E/CN. 4/1314. 2장 제8절).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그의 조국에서 어떤 재야단체에 속하였는지 혹은 박해받는 소수그룹의 구성원이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개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믿을 만한 외형의 존재를 요구하여 협의 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의 사실에 부가하여 관련 국가내에서의 일반적인 인권상황과 소수집단 혹은 반대 그룹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를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은 제1항 규정의 사유가 구체적인 사건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국가내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사례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스웨덴이 초안한 원본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소련은 1979년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문의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종격리, 인종차별 혹은 대량학살, 전국적 해방운동의 억압, 외국영토에 대한 침략 혹은 점령이 국가정책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때 야기되는 대량의 극악한 인권 위반들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의 존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추가조항을 제안하였다.

소련의 제안은 활발히 논의되었다. 많은 대표자들은 이런 종류의 열거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식민주의 혹은 신식민주의 국가정책을 언급하면서 그 개념은 더 한층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특정상황의 열거는 삭제하고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상황만을 언급하는 태협안이 만들어졌다. 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위반 상태의 존재는 그 국가로의 추방, 송환 혹은 인도 가능성은 다른 국가가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항은 만일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국가가 특정 사건에서 고문의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개인을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제2항은 개인을 고질적인 인권위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가에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개인이 특정 그룹에 속하든지 혹은 관련 국가에서는 특정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어떤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고문의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다. 제2항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사례의 고질적인 존재 형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망라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방, 송환 또는 인도가 때로는 행하여질 수 있는 반면, 그러한 고질적 인권위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조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추방, 송환 또는 인도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은 제2항에 기술되어 있다. 즉,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 이유의 존재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한 뒤에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한다.

이 조항은 고문이 각 당사국의 형법에 따라 처벌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항). 더욱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처벌은 미진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제2항). 이것은 고문이 중대한 형벌로서 처벌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구속등과 같이 어떤 최저기준 보다 중한 일정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할 수는 없었다. 형사적 제재조치에 관한 관행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형벌의 정도는 어느 특정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재조치의 정도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만 한다. 통상의 형사적 제재조치가 약한 나라에서 엄하다고 간주되는 처벌이라도 통상의 형사적인 제재조치가 중한 나라에서 약한 처벌이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4조에 의하면 고문에 대한 처벌은 그 국내법 체계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에 적용되는 형벌에 가까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규로서의 협약은 사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원용되어서는 안된다.

고문이 국내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협약 제1조에 따라

고문을 특정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고문행위가 국내법에 따라 범죄가 되어야 하고 그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고문을 독립된 범죄로 할 것인지 부당한 처우, 신체상해, 폭행, 불법적 강압 등을 포함한 단일범죄로 할 것인지 또는 보다 광범위한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를 것인지의 여부를 자국의 재량하에 판단해야 한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든지 형벌은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신적 고문도 형벌의 범주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은 고문을 범죄로 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고문의 미수, 공모 또는 방조를 구성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통이나 피해를 주는 고문행위자는 독자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주로 타인으로부터 지시 혹은 격려를 받으면서 행하기 때문에 공모 혹은 가담하는 등의 형태들도 처벌되어야 한다. 고문행위자는 타인의 수하에 있는 단순한 도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문행위자가 타인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문행위자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반드시 배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지시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제1조의 정의에는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진’ 고통과 피해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 동의 또는 묵인은 제4조 규정의 ‘공모 또는 가담’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조는 항공기 납치, 항공기에 대한 파괴, 외교관에 대한 공격 및 인질 억류와 관련된 협약들의 유사한 조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관련된 행위가 국내법에 따라 범죄가 되며 중대한 형벌로(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혹은 관련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외교사절

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2항 및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협약은 또한 주된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미수 및 공모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며 적절한 형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b),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외교사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 제1항 (d) 및 (e),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2항).

제 5 조

1.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 (b)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 (c)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있거나,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협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고문행위자가 타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행동에 따른 제재조치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테러에 관한 종래 협약, 특히 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 외교사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및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과 같이 본 협약은 '기소 또는 인도'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환언하면 범죄혐의자를 발견한 국가는 처벌을 목적으로 그를 인도하든지 혹은 자국형법에 의거하여 그를 기소하여야 한다. 범죄자에 대하여 자국의 형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 당사국은 그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는 제5조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5조 제1항은 관할권 행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항 (a)에 따르면 협약당사국은 영토적 준거에 근거하여 고문의 미수, 공모 또는 가담 행위를 포함, 고문에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우선 당사국이 그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국제법 혹은 국내법에 따라 이 규칙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즉 외교관, 외국군대, 국회의원 혹은 특별히 면제를 받는 특정집단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면제는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과도하게 확장될 수는 없다.

그런데 제1항은 어떤 국가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만이 아니라 그 관할권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사실 이것은 좀 넓은 개념이다. 관할권을 확립해야 하는 의무는 그 국가의 영토, 영해 및 그 영토와 영해의 영공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군사점령지역, 식민지 영토 그리고 그 국가가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외의 일정범위의 해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고문

이 당사국의 대륙붕에 있는 유정(油井)이나 다른 시설물 위에서 행하여졌다면 그 국가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항 (a)는 또한 선박과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범죄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선박이나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는 마찬가지로 관할권을 확립해야만 한다.

제5조 제1항 (b)에 따르면 범죄자의 국적은 당사국이 고문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해야만 하는 근거의 또 다른 준거가 된다. 이 준거는 다수 국가의 국내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 특히 앵글로-색슨 계통의 법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모든 범죄와 관련하여 영토를 재판관할권의 유일한 준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들은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을 때 고문범죄와 관련한 그들의 재판관할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범죄자의 국적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 의무는 범죄혐의자가 죄를 범한 후 국적을 취득한 관련 당사국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되는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협약의 일반적 의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자에게 그 국적을 부여한 국가는 동시에 범죄와 관련한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사실상 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많은 국가들이 그 국민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한 새로운 국적의 부여는 인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새로 취득한 국적국이 그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면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영토내에 존재하며 그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로 그를 인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1항(b)와 관련한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관할권 행사의 또 하나 준거인 피해자의 국적은 제1항(c)에 실시되어 있다. 이

러한 관할권의 준거는 일단의 법체계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제2항(d)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1항(a)와 (b)에서 언급된 준거처럼 서로 다른 법체계속에서도 똑같이 확고한 준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 제1항(c)의 어구는 당사국들이 이런 근거로도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1항(c)는 관련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국적을 준거로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확립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제2항은 제1항에 언급된 관할권의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각 당사국은 그 관할권내의 영토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항에 의거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를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고문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관점에서 본다면 협약은 범세계적 재판관할권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그 관할권 내의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그 관할권을 확립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그러한 영토내에서 범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국가는 그것에 근거하여 인도요청을 제기하여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는 없다.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확립하여야 할 관할권은 그 국가가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선택적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에 있어 인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참조 협약 제7조) 그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관할권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사국에게는 범죄혐의자가 인도되지 않은 사실 여하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인도요청이 있었으나 거절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인도요청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이 행사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협약의 협상과정중 이 점에 관하

여 여러 의견이 나타났다. 관할권의 행사는 인도요청이 있었으나 거절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표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배적인 의견은 아니었으며 협약에 반영되지도 아니하였다.

범죄혐의자가 인도되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할권 행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7조에서 같은 문제가 보다 명료한 형태로 제기된다. 제7조와 관련된 논리는 제5조에도 준용되므로 다른 나라의 인도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이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결론짓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협약준비과정에서 관할권은 인도요청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협약 원본에는 그러한 시간적 제한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은 인도요청이 없으리라고 결정하는 적절한 시점에 대하여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다.

제1항(a)와 같이 제2항의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표현은 군사점령 지역을 포함하여 그 국가의 실질적 통제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제3항에서는 제5조가 국내법에 존재할 수 있는 관할권의 준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6 조

1. 자국 영토내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 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4. 일 국가가 본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표명한다.

범죄혐의자가 기소 또는 인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그를 구금하거나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항은 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제6조,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 제6조, 외교사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6조 및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본 협약 제6조는 상기 협약 조항들과 유사하다.

본 협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당사국은 고문혐의자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 문구는 기본적으로 각 당사국이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황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당사국은 이를 판단할 때 관련 국내법에 규정된 여러 요건 특히 혐의의 정도 및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국내법에서는 구금이나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시간적 제

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시간적 제한이 인도 또는 가공의 기소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항의 두번째 문장은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조치 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편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제1항에서 언급한 ‘다른 법적 조치’는 경찰 등 관계당국에 규칙적으로 보고할 의무뿐만 아니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예를 들어 출국금지 혹은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의무)을 포함하고 있다.

제2항은 어느 개인이 일시 구금되었거나 개인적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신속하고 신중한 절차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자체없이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구금하고 있는 국가 자신이 구금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오로지 인도를 목적으로 구금되었을 때의 상황은 좀 다르다. 그런 경우에 사실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하며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필요한 자료를 구금하고 있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는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가능한 한 짧은기간 동안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은 범죄인 인도조약 및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기간제한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구금된 외국인이 자기 국적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통신할 수 있는 권리는 제3항에 언급되어 있다. 이 규칙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와 비슷하나 멀 상세하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거주지 국가의 대표와 통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무국적자들의 문제에 관한 한 제3조는 보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제3항은 도움을 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그의 국적국 또는 거주지 국가 당

국에게 구금된 자의 의사와 반하여 그와 통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당사국이 범죄혐의자를 구금하였을 때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증거 즉 범죄자 및 피해자의 국적국 뿐만 아니라 그 관할권내의 영토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라는 증거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통보의 의무는 일반적인 성격의 것이므로 통보는 그가 체포된 국가에서 관련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에 언급된 국가들은 인도요청 가능성은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타국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다. 결국 구금하고 있는 국가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더라도 동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제6조 제4항의 둘째 문장에는 구금하고 있는 국가는 그 조사결과를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관할권행사의 여부도 표명하여야 한다. 이들 다른 국가들에게는 범죄혐의자의 인도를 요청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는 그런 요청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해 지기 때문에 통보는 가능한 한 빨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7 조

1.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제4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2.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3.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제7조는 협약이 기초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혐의자는 기소를 목적으로 타국으로 인도되든지 또는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기소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기소 또는 인도해야 하는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제7조에 설시되어 있다. 제5조가 고문범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준거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 당사국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조는 고문혐의자가 당사국 관할권 내의 영토에 존재하는 경우의 관할권 행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표현의 의미에 관하여는 제5조에 그 의미가 언급되어 있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만일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사건을 검찰등 기소담당 국가기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구는 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제7조,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금지에 관한 협약 제7조, 외교사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7조 및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오로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 중의 한 국가에게 인도를 거절하지 않는 한 기소할 의무가 없는 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 협약 준비과정 중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협약에 특

별한 조항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만족스러운 해결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사실 기소의무가 인도요청에 대한 거절여부에 달려 있다면 이는 협약의 효과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그 소관기관이 그 영토내에서의 범죄발생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묵인하고 있음에도 기소를 위한 범죄자의 인도요청을 아주 꺼리고 있다. 만일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5조 제1항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인도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기소 또는 인도의 원칙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협약의 효과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더우기 제7조 제1항의 '동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의 문구는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인도요청이 없었거나 또는 그러한 요청이 거절되었음을 불문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소추기관에 이 사건을 회부해야 하는 의무를 창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국가는 기소를 목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기될 수 있는 인도요청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인도요청이 없을 것 같다고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은 관련 당사국에게 맡겨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당연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황은 오랜 지체없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 혹은 인도요청이 예측되지 않는 국가의 자세나 반응으로부터도 자주 나타날 것이므로 기소의무는 초기단계에서 부각될 것이다. 만일 의문이 있다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

고 있는 국가에게 외교적 통로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문의함으로써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인도요청이 있을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구실하에 오랫동안 기소를 연기하는 것은 협약의 일반적 목적과 합치하는 것이 아니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의무는 기소가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소관기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다. 제2항에 의하면 이들 소추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정상적인 증거기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항 둘째 문장에서는 제5조 제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이 제5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결코 덜 엄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증거의 부재는 범죄가 발생한 나라에서 보다 소추하는 나라에서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증인을 부르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특히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사건을 조사하는 데 비협조적인 경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둘째 문장은 비록 범세계적 재판관할권의 원칙이 협약을 효력있는 법규로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왔지만 불구하고 부적절한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혐의자를 처벌하거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제3항은 고문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가 주어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고문혐의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에 처하여질 수는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기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인권기준이 반영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고문혐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제 8 조

1.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을 경우, 동 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간에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4.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협약에 따르면 인도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 인도요청을 받은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인도를 하든지 또는 그 영토내에서 협약상 기소를 하든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협약체제내에서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에 고문혐의자를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제8조는 가능한 한 인도를 위하여 법적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항공기 불법억류금지에 관한 협약 제8조, 민간항공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협약 제8조, 외교사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인사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8조 및 인질억류에 관한 국제협약 제10조와도 상응한다.

제8조 제1항은 양자든 다자든 당사국들간에 이미 존재하는, 혹은 미래에 체결될 인도조약과 협약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조약에 관하여 제1항은 고문범죄는 그러한 조약에서 인도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그러한 범죄가 조약상에 이미 망라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도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당사국들간에 미래에 체결될 인도조약과 관련하여 제1항은 고문범죄를 인도 가능한 범죄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법 원칙에 따르면 조약없이는 인도가 가능하지 않다. 제2항은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당사국이 그 국가와 인도조약이 없는 타 당사국으로부터 고문범죄와 관련한 인도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협약은 인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협약준비과정 중, 원문에는 '할 수 있는(may)'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 또는 '해야 할(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할 수 있는(may)'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관련 당사국이 사실상 어느정도까지 협약을 인도의 근거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가 아닌 당사국은 그러한 조약 없이도 그 국내법에 근거하여 특정 범죄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고문범죄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조약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 당사국들이 고문범죄를 그들 사이에 인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제3항은 그들 국가들 사이의 인도를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청받은 국가의 법규가 적용될 것이므로, 국내법에는 인도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르면 인도를 위하여는 범죄가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져야만 한다. 그러나 제8조 제4항은 고문방지협약 당사국간의 인도 목적을 위하여 고문범죄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 확립이 요구되는 국가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인도에 있어 영토고권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도 범죄혐의자를 마치 범죄가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처럼 그 국적국에(제5조 제1항(b)) 인도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8조가 제5조 제1항(c)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의도인지에 대하여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5조 제1항(c)는 당사국이 피해자의 국적에 준거하여 관할권을 확립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는 없다는 관점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가 삽입되었다. 그러나 합리적 해석으로는 당사국이 그러한 준거에 근거하여 고문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확립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인도를 목적으로 관련 범죄를 피해자 국적국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제 9 조

- 당사국들은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조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본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고문범죄에 관한 형사상 절차와 관련하여 상호간 사법공조를 해야만 한다.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형사상 절차가 제기되는 국가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에 관하여 증거 및 정보를 얻는 데 고문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경우 재판과정에서 타국으로부터의 증언을 들어야만 하며 본조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공해야만 하는 지원은 그러한 증언청취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협약의 준비과정에서 영국대표는 제9조에 따라 요청받은 국가가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른 국가 대표들은 요청받은 국가의 법에 따라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이 없었다. 당사국의 국내법이 다른 국가에 대한 사법공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요건을 설정하였거나 혹은 국제적인 법적 지원문제의 결정에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을 때 그런 조건 혹은 절차는 제9조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호간 ‘최대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사국은 상대국가가 과도하게 부담스럽거나 만족할 만한 조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획득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두 당사국이 상호 사법공조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제9조 제2항에 명백히 표현된 대로 당사국들이 동조 제1항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양자간 조약상의 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제 10 조

-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민간 또는 군의 법집행 인사,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16조 제1항과 함께 제10조에 규정된 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진 경우 고문이외에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다른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범주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특정 국가의 상급 기관의 지시, 고무 또는 묵인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행위가 경찰관, 교도관 또는 개인의 자유가 유린된 사람들의 처우에 관계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10조의 규정은 그러한 행위들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16조 제1항과 함께 제10조 제1항은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의학계 인사를 포함하여 법집행과 관련있는 군인 또는 민간 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된 범주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공무원 및 기타 구금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또한 포함된다.

그러한 교육 및 정보가 정부기관에 의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련과정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교육 및 정보는 민간단체에 의해 일반인을 위한 훈련과정에도 또한 포함될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 문제가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1979년과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법 집행관 행동장전' 및 '의학윤리원칙' 뿐만 아니라 특히 1975년 선언과 본 협약과 이들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한다. 또한 정보는 고문과 관련하여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처벌에 관하여도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 제2항 역시 제1항만큼 중요하다. 제16조 제1항과 함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는 그들의 자유를 유린당한 사람들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있는 공무원 및 기타 모든 개인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도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관행들의 금지는 많은 관련 인사들에게도 생소한 일반적 규범에 포함될 뿐 아니라 수감자 및 구금자의 처우에 직접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규정 및 지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금지는 '법 집행관 행동장전' 및 '의학윤리원칙'에 포함된 것처럼 적용가능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여 분명한 용어로 서술되어야 한다. 특별한 규정 및 지침에 이러한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개개의 경찰관, 교도관 또는 군인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고위 당국자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지시, 고무 또는 묵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와같은 규정과 지침은 협약 제2조 제3항과 함께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

는 다른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어떠한 상황도 협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고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원용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 및 지침이 분명히 언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11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본조는 제16조 제1항과 함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문과 억류에 관한 규칙과 관행의 체계적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심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 물론 심문은 고문의 목적 중 하나로서 자백 또는 정보 획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제1조에도 암시되어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고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심문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심문 방법은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 또는 굴욕적 처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제1조와 관련하여 논의된 구주인권재판소의 판례도 언급될 수 있다.

'체계적인 검토'라는 용어는 그러한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거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배제하는 제도 및 그러한 방법과 관행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각 당사국이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경우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모든 행위의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제10조와 관련한 논의는 본조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이 존재할 때에는 관련 인사들에 대하여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강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규정 및 지침을 한층 더 특정하고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데 따른 제재조치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용어의 의미는 제5조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제 12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10조, 제11조와 같이 제12조도 제16조 제1항과 함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적용된다. 한편 그러한 모든 행위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치는 금지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금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모든 의문점이 조사되어야만 한다. 본 조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그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조사는 고소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고문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거나 그에 대한 보복의 위험 때문에 고소를 삼가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제12조는 고문행위(혹은 제16조 제1항에 언급된 것처럼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충분하며 이런 의심에 대한 정보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모든 행위에 관한 의문점들이 조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공무원들은 그들의 상급자들이 그런 행위들을 수용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거나 최소한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제12조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가지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것은 '신속성' 및 '공정성'이다. 이 두가지 요건은 중요하다. 신속성은 피해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공정성을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으로부터 진행되는 조사나 협의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사는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의 협의가 있는 사람과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이러한 사람들 또는 그들이 속한 조직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위임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용어의 의미는 제5조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제 13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인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같이 제13조도 제16조 제1항과 함께 고문 및 기타 잔혹

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적용된다. 당사국은 제12조에 따라 그 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제13조는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고소사건은 수사 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되어야만 한다. 신속성과 공정성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와 관련한 논평에서 언급하였다.

제1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책무상(ex officio)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고소권이 있으며 그의 고소가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중요하다. 고소할 권리는 만일 관련자가 구금중인 경우 그의 구금에 책임있는 공무원은 그의 고소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것이 만일 믿을 만한 사 실에 기초하여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소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는 많은 경우 더 나쁜 처우나 다른 보복의 위험에 처하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제기를 두려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13조의 둘째 문장은 각 당사국이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고소인의 구금장소 이동, 그의 구류기간중 책임있는 사람의 인사조치, 조사기간중 증인출두 등과 같은 여러가지 조치들이 예견될 수 있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고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증언을 들을 수도 있다. 이들이 진술의 결과로 어떠한 보복의 위험에도 처하여지지 않는 것이 증거의 진실성과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13조의 둘째 문장은 당사국들이 그러한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하고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당사국들의 의무는 '그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발생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처우나 형벌의 주장과 관계가 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제5조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다.

제 14 조

-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 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조 제1항에 따르면 고문 피해자는 각 당사국의 법체계 내에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상회복은 기본적으로 관련자에게 행하여진 부당행위의 공식적인 인정에 있고 보상은 물질적(주로 금전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더욱이 보상을 위한 법적 권리가 국내법에 존재해야 한다. 보상이 특정 사건에서 은혜로운(ex gratia)조치로서 주어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제1항은 보상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상은 정당하고 적절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 상황에서 보상은 나라마다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피해보상 수준과 관련한 법적 관행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에 달려있다.

그러나 보상이 정당하고 적절해야 하므로 순전히 상징적인 정도의 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문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첫째, 피해

자가 의학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그가 고문의 결과로 받은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방법으로 보상되어야만 한다.

보상은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적·정신적 치료 혹은 별도의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그러한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항의 둘째 문장은 고문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양가족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부인, 남편 및 어린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친척들은 사망자로부터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생계유지를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상에 관한 부양가족의 권리는 부양가족 자신들이 받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독립적인 권리이다. 이것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는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어야만 하는지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정당하고 적절해야만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당사국들은 고문관련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사건에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항은 국내법에 따라 보상에 관한 광범위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이 권리가 제14조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법체계내에서 고문피해자는 협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고문 피해자를 도와 주었던 사람들은 어떤 국내법에 따라 그들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도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제14조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협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1975년 선언 제12조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일체의 진술은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 또는 타인에 대하여 증거로서 원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 제15조는 위 선언과 달리 오로지 고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15조의 규정은 두가지 다른 고려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먼저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진술은 보통 믿을 만한 진술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법정에서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 ‘공정한 재판’ 원칙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재판 절차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나라에서 조차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진술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둘째로 고문은 주로 사법절차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진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만일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진술이 증거로서 원용될 수 없다면 고문을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거로서 이용될 수 없다면 이는 고문방지를 위한 간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1975년 선언 제12조는 그러한 진술은 소송절차 중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증거로서 원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협약 제15조는 이 원칙

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고 있다. 고문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고문에 의한 어떠한 진술이 행하여 졌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만 증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진술이 그러한 방법으로 원용된다면 그 의도는 진술이 진실된 진술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은 특별한 진술이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며 아마 그렇지 않으면 고문받은 사람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가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정보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예외가 실제보다 더욱 분명하다. 고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사법절차중에서 진실인 것처럼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6 조

1.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법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유엔총회는 1977년 결의 32/62에서 인권위원회에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협약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한 요청은 여러번의 후속 결의에서도 반복되었다.

이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실무작업반이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고문의 개념은 합리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지만,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협약은 당사국들에게 형사상 및 절차상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많은 구속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이들 의무를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과 같은 모호한 개념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른 한편 실무작업반은 협약이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성격의 어떤 의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무작업반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협약의 의무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도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국들은 먼저 그 관할권하의 영토내에서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그들의 교사, 동의 또는 묵인하에 고문에는 이르지 않으나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 제1조 제1항에서는 오로지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행위만이 당사국의 의무에 포함된다.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라는 용어는 제5조의 해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고문에 책임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제16조는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람들의 범주를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특정하

고 있지만 이들 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조는 제1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협약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제16조에 언급된 행위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겼거나 혹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 책임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힘 또는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이유는 제1조의 고문 피해자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제16조의 의미가 위와 같이 제1조의 취지와 상응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두 조항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제1조의 고문의 정의와 달리 본 조항에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계되는 행위의 목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목적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상당한 것 같다.

제1항의 둘째 문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무는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안 준비과정에서는 제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의무가 그러한 처우나 형벌에도 적용되어야만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이들 조항에 따른 의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2항에서는 국제법규 또는 국내법에 있는 광범위한 보호는 다른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하여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보호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 또는 추방에 관한 국제법규나 국내법에 관련하여도 비슷한 설명이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또는 추방된 사람이 고문에는 못미치지만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나라로의 인도 또는 추방의 금지가 다른 국제법규 또는 국내법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한 본 협약 제3조가 오

로지 고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이들 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인도 또는 추방금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II. 제2부 : 시행규정

제17조 내시 제24조로 구성된 제2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제적 감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특별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유엔의 후원하에 체결된 다른 인권조약들의 예를 따르고 있다.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65)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고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고 한다)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예를 따르고 있다.

제2부에 규정된 시행규정의 많은 요소들은 이들 3개 조약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다른 협약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0조의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절차에 관한 기본규칙은 제17조 및 제18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8조 내지 제39조에 포함된 복잡한 규정보다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및 제10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간결한 규정의 예를 따른 것이다. 동시에 협약의 작성자들은 논리성 및 계속성의 관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하였다.

제 17 조

1.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동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키를 원하는 인사로서 지명된 사람의 유용성에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본조 제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임기 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거, 위원의 임기 및 공석충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인권이사회(18명), 인종차별철폐위원회(18명)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초기 단계 18명, 뒤에 23명으로 증원) 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다. 고문방지위원회가 다루는 주된 문제는 다른 위원회가 취급할 넓은 범위의 문제들보다는 특정되어 있으므로 10명의 위원수는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 경험 및 판단에 기초하여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들을 지명한 정부나 자신들의 국적국을 대신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인

종차별철폐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라고 표현된다. 그들이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인사들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의 인권이사회에 관한 규정과 형식이 동일하다. “법적 경험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한다”는 규정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평한 지역적 배분’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1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와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이들 3개 조약은 같은 맥락에서 ‘다른 형태의 문화’ 및 ‘주요법 체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이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2항의 첫번째, 두번째 문장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권이사회 위원 지명의 유용성에 관한 3번째 문장은 아래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요소이다. 협약작성과정 초기에 스웨덴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기존의 인권이사회에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유엔의 법률고문측등이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협약당사국 국민임과 동시에 가능하면 인권이사회의 위원이기도 한 인사들로 고문방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실무반의 토의과정에서 몇몇 대표들은 이러한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덜 부담스러운 형식으로서 “인권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인사로서 지명된 사람의 유용성에 유의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고문방지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활동은 긴밀한 협조가 바람직하며, 특히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협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조는 협약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 심의 및 선택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따른 국가 또는 개인의 통보와 심리에도 적용된다.

다음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선거체제는 필수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항목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협약의 작성자는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구성코자 하였다.

제3항은 위원선출을 위한 당사국 회의에 관한 일반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3개조약은 이러한 규정 이외에 제1차 회의에 관한 규정등과 같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다른 조약들은 위원선출을 위한 회의가 격년주기로 개최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위원회의 위원임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3개 조약들과는 달리 이 협약은 위원선출을 위한 회의가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4항은 위원선출의 시기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나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규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후자의 2개협약에 의하면 최초회의는 협약발효후 6개월 이내에 개최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거일 최소 3개월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제5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년이며, 2년마다 임원의 절반이 교체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교체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이런 방법으로 상당한 수준의 업무의 계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원은 적어도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재지명된 경우 재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4년이 아닌 2년 동안 근무할 위원의 명단은 선출을 위한 회의의 의장에 의해 추첨으로 선정 된다는 점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같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하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제6항은 임기중 공석의 충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관련규정과 다르다. 현 협약의 작성자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정교한 체제가 고문방지위원회에는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그렇다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제5항(b)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7조 제7항에 포함된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다. 협약은 이러한 규정과 달리 ‘우연한 공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위원의 교체도 위원회의 승인에 따르지 않고 협약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제6항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요건이 부당한 지연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7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제6항과 일치한다. 이것은 위원회 경비가 위원을 지명한 국가에 의하여 부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반면에 전 협약 당사국이 위원회 위원의 총 경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비용의 당사국간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 두었다. 협약 초안과정에서 실무반의 의장, 보고자가 제안한 상세한 형식을 기초로 이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의 제안은 몇몇 대표에 의하여 너무 세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실무반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결국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을 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부터 지침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개협약 모두 위원회의 경비에 대한 당사국의 어떤 재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경비가 유엔에 의해 부담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발효후 당사국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경비는 유엔의 분담율에 비례하여 당사국간에 분배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 단일국가의 부담율은 해당년도 경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8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 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a)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 (b)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회의 이후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전 당사국은 본 조 제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회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내부절차, 직원 및 시설, 그리고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경비부담을 다루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의 보

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조항 뒤에 위원회의 내부절차, 직원 및 시설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 협약의 작성자는 그러한 규정을 당사국에 의한 보고체제와 같은 특정한 실행절차에 관한 조항 앞에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36조 그리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5항은 유엔의 다른 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조약과 관련하여 유엔자체 및 조약상의 기관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유엔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당사국이 부담하며 위원회 및 당사국회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경비는 당사국에 의하여 유엔측에 변상된다. 협약발효후 당사국들은 제1차 회의에서 경비가 유엔의 분담율에 비례하여 당사국간에 분배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 단일국가의 부담율은 해당년도 경비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 19 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은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조항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가 협약의 최종문안을 확정하기 바로 직전까지 광범위한 토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와 비교될 만한 보고서 제출절차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3개 조약은 당사국이 자국에 대하여 조약효력 발생후 1년내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그 이후에는 당사국이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정기보고체제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국이 자국에 대한 규약효력 발생 후 1년내에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1981년 인권이사회는 규약 당사국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제19조 제1항은 4년의 보고서 제출주기를 정하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는 다르게 추가보고서에는 “당사국이 취한 새로운 조치를 보고한다”고 하여 포괄적 성격의 제1차 보고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들 조약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 조약의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지만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직접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후 1년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이 협약상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관련 당사국이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만을 언급하는 것같이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이러한 형식은 어떤 조치가 취하여진 시기 및 배경이 무엇이든 실제로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제1항은 보고대상이 될 조치의 종류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제1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처럼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조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40조와 같이 단지 ‘조치’만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사용된 형식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더 좁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협약의 제2조 제1항이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이 상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협약 문안에 비추어 볼때 당사국이 취한 조치라는 것은 관련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취한 조치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보고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정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조치’라는 용어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지만 본 협약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시행에 있어 ‘진전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제2항은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라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심의된다. 본 협약은 다른 조약들과 같이 보고서의 심의를 위한 절차를 상술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확립된 관행, 즉 위원회가 공개된 회의에서 관련 당사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토의하는 관행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제3항은 위원회와 특정국가와의 서면의사교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유엔인권조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인원이사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40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자체 보고서’(구체적으로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에 대한 자체 보고서) 및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당사국에 보낼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인권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9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1조에 따라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 및 정보검토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적인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 및 일반적인 권고에 대하여 당사국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각 위원회로 하여금 특정당사국에게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냐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협약에서는 제19조 제3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조항에서는 개개의 ‘보고서에 대하여’ 및 개개의 ‘관련 당사국에’ 그러한 의견제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예에 따라 ‘일반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유엔총회가 이러한 용어 대신 ‘의견 또는 제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견 또는 제안’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3항의 문안은 그러한 일반적인 의견이 특정당사국의 특정보고서에 관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어구에 의한다면 위원회가 다수의 보고서 검토를 토대로 모든 당사국에게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협약의 작성자들이 의도하였던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제4항은 협약의 시행체제에 있어 또 다른 새로운 요소를 대표한다. 이 규정의 독자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위원회의 연례보고서가 공개된 보고서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개개 당사국에 제시한 일반적인 의견을 공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량에 의하여’라는 어구는 위원회가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그러한 의견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도 공개할 의무를 진다. 한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이 이 조항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할 연례보고서에 자국의 보고서 사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시행되어온 현재까지의 관례와 같이 제1항에 따른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는 별도로 공개될 수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 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력을 거쳐 제24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는 협약의 시행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술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협약 준비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조항은 다른 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합의는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협약의 최종 문안을 결정하는 날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협약당사국이 제20조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항인 제28조의 삽입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는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0조에 규정된 절차는 단지 고문에만 적용되며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협약에 이러한 조사절차를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상당부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 절차로부터 연유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70년 채택된 이 결의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정부적 출처로부터 접수한 통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형태의 극심한 그리고 신뢰할 만큼 증명된 인권위반사태로 보이는 특별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유엔인권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감시대상이 되어 있는 국가가 절차의 비밀단계에서 명백하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공개하는' 방법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하였다.

제네바 및 뉴욕에서의 토의과정에서 진전된 제20조의 문안은 위원회에 알려진 문제에 관해 관련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의 중요한 측면은 문제가 초기에서부터 비밀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요건은 최후 단계까지 유지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위원회가 조사 및 그 후속조치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

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절차를 시작한다. 이 문안은 그 정보원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정보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공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고려될 수 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위원회는 그 정보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절차의 첫번째 단계가 된다. 위원회는 정보가 믿을 만하며 앞에서 언급한 취지의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절차는 관련 당사국으로 하여금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가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원을 밝히는 것이 심각한 위협을 내포할 수 있다면 이를 밝혀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세번째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에 관련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 후에는 비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수가능한 모든 관련정보를 고려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할 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견해를 언급함으로써 이 범주의 정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에 부응하게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이는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3항은 네번째 절차, 즉 조사자체를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이 맥락에서 다시 관련 당사국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는 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관련 당사국이 협조를 거절

한다면 이는 조사수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편 그러한 거절은 근거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일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일 것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 조사를 한 위원 또는 위원들은 제2항 후반부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항은 다섯번째 절차를 다루고 있다. 다섯번째 절차는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의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제안은 특히 조사에 의하여 조직적인 고문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제시될 것이다. 5번째 절차가 끝난후 위원회는 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위원회 조사결과 및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은 우선 제1항 내지 제4항의 모든 절차가 비밀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은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물론 이러한 절차가 관련 당사국이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의견 및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특히 관련되어 있다.

제5항의 2번째 문장은 일곱번째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 절차는 위원회가 연례보고서에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보고서는 조직적으로 고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존재하였으며 비밀조사가 행하여졌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러한 결과보고서는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 및 제안과 관련 당사국의 이에 대한 대응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국의 대응이 긍정적이어서 시정을 위한 효과적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공개'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조치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공개'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하고 고문의 관행이 실제한다고 이를 종식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한 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사국의 협력에 보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당사국과 협의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당사국이 이에 반대할 경우 반드시 이를 피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당사국이 찬성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요약보고서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관련 당사국이 이러한 보고서의 공개에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제 21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

련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d) 위원회는 본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f)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b)'에서 언급된 관련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위원회는 '(b)'에 의한 통보 접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 한다.
- (1) '(e)'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e)'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같은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다른 당사국들의 협약 의무 불이행에 관한 당사국들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있는 유사한 당사국 이의제기절차를 모방한 것이다. 이와 비교할 만한 당사국의 이의제기절차는 구주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및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 헌장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모든 조약의 경우와 같이 본 협약은 '이의'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의제기절차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의제기절차와 같이 선택적이다. 그 선택적 성격은 당사국이 언제든지 본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항 서두 및 그러한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2항 세째 문구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적인 체계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본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만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본조의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1조를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편집상의 변화 이외에도 제21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설정된 체계와 아래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제1항 (c)는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뿐만 아니라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항 (e)는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우호적인 해결을 언급하고 있다. 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2조의 규정과 달리 특별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에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만 제1항(e)의 둘째 문장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제2항은 본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최소한 5개 당사국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21조가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접수 6개월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 (a)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의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 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의 또는 개인을 대신한 이의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개인의 이의제기절차를 모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만한 개인의 이의제기절차는 구주 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및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권 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약과 같이 본 협약은 '이의' 등의 용어는 사용치 않고 있다.

동 절차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개인의 이의제기절차처럼 선택적이다. 그 선택적 성격은 당사국이 언제든지 본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항 서두 및 그러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제8항 세째문구에 나타난다.

본조의 규정은 협약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의제기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편집상의 변화 이외에도 제22조는 동 의정서에 설정된 체계와 아래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

의정서의 제1항은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의' 통보만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본조 제1항은 위원회가 협약규정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1항은 누가 개인을 대신하여 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비정부기구가 직접 피해를 받은 개인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의정서 제5조는 '서면 정보' 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면으로는 불가능한 정보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협약의 방식은, 예를 들어 위원회가 증인 또는 이의를 심리하는 전문가로부터 청문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제5항(a)에 따르면 위원회는 만일 같은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거나 이미 그러한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다면 이의를 심리할 수 없다. 후단의 제한은 같은 문제가 그러한 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는'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는 의정서 제5조 제2항(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무엇보다도 위원회가 인권이사회 또는 구주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리된 문제에 대한 이의는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이의제기가 단순히 형식적인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본 협약에 따라 새로이 심리하는 데는 장애가 없을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503 절차에 따른 조사는 그 결의에 의한 조사가 개인적 권리위반등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관한 것인 한 고문방지위원회가 심리하고 있는 개인의 이의 심리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제5항(b)는 구제절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8항은 본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을 최소한 5개 당사국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하여 제22조가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본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3조와 일치한다.

제 24 조

위원회는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본 협약에 따른 연례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들 법규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들이 국제연합총회에 그 활동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송부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협약의 작성자들은 고문방지위원회위원을 선출한 당사국들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감독기구들의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공개적인 보고서 이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제19조 제4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이다.

III. 제3부 : 부속규정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6 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독자는 ‘서명’, ‘비준’ 및 ‘가입’의 용어 설명은 제2부를 참조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후원에 따라 이루어진 조약들의 관행과 같이 본 협약은 발효 후에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국가들은 발효 전에라도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협약의 발효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국들은 이를 서명하고 추후 비준에 의하여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든지 가입에 의하여 즉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제 28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본조는 총회에서의 협약초안 심의과정 중 백러시아에 의해 제안된 선택적 조항으로 제20조와 관련하여 합의를 가능케 한 조항이다. 본조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절차와 같이 제20조의 절차를 완전히 선택적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그러한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은 제20조에 자동적으로 구속된다. 둘째로 제28조에 따른 제20조의 적용 유보선언은 비준 또는 가입 후에는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보를 선언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협약에 구속되면 당사국들은 제20조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할 수는 없다. 이는 가입시 유보를 선언하였으나 제28조 제2항에 따라 추후 그 유보를 철회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와 달리 제21조 및 제22조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당사국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때는 항상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접수 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당사국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본조의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1조에 기초하여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를 가미한 것이다. 동 규약과 비교하여 편집상의 차이 이외에도 두가지 차이점이 있다. 제1항의 '동 통보접수 후 4개월 이내에'라는 문구 삽입과 제2항에서의 국제연합총회에 의한 승인 요건의 삭제이다.

제 30 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본 조 제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제1항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약간의 편집상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9조

와 일치한다.

제 31 조

1.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2.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의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 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달리 본 협약은 폐기에 관한 분명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1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1조와 일치한다. 제2항은 폐기의 효과를 제한하는 두가지 추가적인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두번 째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2조 제2항의 선례가 있는 것으로 만일 위원회가 특정한 문제의 심리를 이미 시작하였다면 그 러한 심리는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제 32 조

-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 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개정안의 발효일자
 - (c) 제31조에 의한 폐기

비록 본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조약들의 표준적인 부수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여성차별철폐협약등에는 유사한 조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 33 조

1.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본조는 국제연합의 후원에 따라 이루어진 조약들의 관계적인 종결조항이다.

附 錄

I.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의 處遇나
刑罰禁止協約 第19條 第1項에 따라 當事國이 提出할
最初報告書의 形式과 內容에 관한 一般指針 (1988)

II.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의 處遇나
刑罰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保護에 관한 宣言 (1975)

I.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할 최초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1.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2. 아래에 열거된 일반지침은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88년 4월 20일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잠정 채택되었다. 이 지침의 준수는 최초 보고서가 통일된 형태로 제출되도록 하여 협약 제19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제1부 : 일반적 사항

제1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a) 협약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는지 또는 배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법률제도의 간략한 서술;

I.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S OF INITIAL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first session on 20 April 1988

1. Under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ir undertakings under the Convention,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reafter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upplementary reports every four years on any new measures taken and such other reports as the Committee may request."

2. The general guidelines, appearing below were provisionally adopted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at its first session on 20 April 1988, with a view to assisting the States parties with the preparation of their initial reports.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would help to ensure that initial reports are presented in a uniform manner and assist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fulfil the tasks entrusted to it pursuant to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3. Initial reports by States parties should be presented in two parts as follows:

Part I :Information of general nature

This part should:

(a) Describe briefly the general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e prohibited and eliminated in the reporting State;

- (b) 보고하는 국가가 고문방지협약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국제법규의 당사국인지의 지적;
- (c) 고문방지협약의 내용이 원용되고 법원, 다른 심판기관 혹은 행정기관들에 의하여 직접 실행되는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실행되기 위하여 국내법이나 행정규칙 등의 형태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
- (d) 어떠한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이 협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지적;
- (e)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에게 어떤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 (f) 보고하는 국가내에서 협약의 실질적 이행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서술 및 협약에 따라 보고하는 국가의 의무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문제점 지적.

제2부 : 협약 제1부의 각 조항들과 관련한 정보

제2부는 협약 제2조 내지 제16조의 이행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가 각 조 및 항의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각 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혹은 기타 조치내용;
- (b) 상기 조항들의 실질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혹은 문제점들;
- (c)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위한 조치상황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한 모든 정보.

- (b) Indicate whether the reporting State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r it has national legislation which does or may contain provisions of wider application than those provided for under the Convention;
- (c) Indicate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an be invoked before and directly enforced by the courts, other tribunals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whether they have to be transformed into internal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be enforc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 (d) Indicate what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have jurisdictions over matters dealt with in the Convention;
- (e)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o an individual who claims to have been a victim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f) Describe briefly the actual situation as regard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reporting State and indicate any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of the reporting State under the Convention.

Part II : Information in relation to each of the articles in Part I of
the Convention

This part should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by the reporting State of articles 2 to 16 of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sequence of those articles and their respective provisions. It should describe in relation to the provisions of each article:

- (a)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in force which give effect to those provisions;
- (b) Any factors or difficulties affect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 (c) Any information on concrete cases and situations where measures giving effect to those provisions have been enforced.

이 보고서 제출시에는 동 보고서에 언급된 주요한 법률등의 사본을 실무용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중 1개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본들은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보고서와 함께 일반적인 배포를 위하여 복사되지 않을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등의 원문이 실제로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거나 보고서 자체에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port should be accompanied by sufficient copies in one of the working languages (English, French, Russian or Spanish) of the principal legislative and other texts referred to in the report. These will be made available to members of the Committee.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y will not be reproduced for general distribution with the report. It is desirable therefore that, when a text is not actually quoted in or annexed to the report itself, the report should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be understood without reference to it.

II.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총회는,

국제연합현장에 선언된 제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 권리의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고려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현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본 결의에 부속된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모든 국가 및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에 대한 지침으로서 채택한다.

* 1975. 12. 9 유엔총회에서 결의 3452(XXX)로 채택되었으며, 이 선언은 모두 12개조로, 고문방지협약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II.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52(XXX) of
9 December 1975*

The General Assembly,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Consider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sidering also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provide that no one may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text of which is annexed to the present resolution, as a guideline for all States and other entities exercising effective power.

부 속 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제 1 조

1. 본 선언의 목적상 “고문”이란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이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본규칙과 부합되는 범위의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고문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악화되고 의도적인 형태이다.

제 2 조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은 어떠한 것이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부정하고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규탄되어야 한다.

ANNEX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Declaration,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 Torture constitutes an aggravated and deliberate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2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3 조

어떤 국가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 또는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4 조

각국은 본 선언의 규정에 상응하여, 그 관할권내에서 고문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5 조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 인사 및 기타 공무원들의 훈련에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는 충분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상기 금지 내용은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또는 처우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말하여진 일반적인 규칙 또는 지침중 적절한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각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토내에서 자유를 속박당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Article 3

No State may permit or tolerate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not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4

Each State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laration, tak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being practised within its jurisdiction.

Article 5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of other public officials who may be responsible for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ensure that full account is taken of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is prohibition shall also, where appropriate, be included in such general rules or instructions as are issued in regard to the duties and functions of anyone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or treatment of such persons.

Article 6

Each State shall keep under systematic review interrogation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in its territory,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cases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 7 조

각국은 제1조에서 정의된 바의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에의 가담, 공모, 사주 또는 고문의 미수를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제 8 조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은 관련 국가의 소관기관에 그 사실을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제1조에서 정의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관련 국가의 소관기관은 정식 고소가 없더라도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사결과, 제1조에서 정의된 바의 고문행위가 범하였던 것이 밝혀진다면, 국내법에 따라 고문혐의자 또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기타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간주되면, 고문혐의자 또는 범죄자는 형사절차, 징계 절차 또는 기타 적절한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Article 7

Each State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The same shall apply in regard to acts which constitute participation in, complicity in, incitement to or an attempt to commit torture.

Article 8

Any person who alleges that he has been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shall have the right to complain to, and to have his case impartially exa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concerned.

Article 9

Wher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n act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has been committe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State concerned shall promptly proceed to an impartial investigation even if there has been no formal complaint.

Article 10

If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8 or article 9 establishes that an act of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appears to have been committed, criminal proceedings shall be instituted against the alleged offender or offender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f an allegation of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s considered to be well founded, the alleged offender or offenders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disciplinary or other appropriate proceedings.

제 11 조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에 의하거나 그의 교사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으로 증명되면, 고문 피해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구제 및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고문 및 기타 잔虐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일체의 진술은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 또는 타인에 대하여 증거로서 원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11

Where it is proved that an act of torture or at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been committed by or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the victim shall be afforded redress 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rticle 12

Any statement which is established to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y not be invoked as evidence against the person concerned or against any other person in any proceedings.

유엔拷問防止協約
-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

1995年 12月 日 印刷
1995年 12月 日 發行

發行 法務部 法務室 人權課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제2정부종합청사

전화(02) 503-7044

FAX(02) 503-7046

印刷 文衆印刷(株)
(02) 503-7764
